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2
----------	------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의자 : 이채익 · 이현재 · 윤영석

함진규 · 김도읍 · 곽대훈

여상규 · 홍문종 · 정갑윤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에 설치해야하는 검지경보장치, 제독설비 등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 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설비에 대한 성능인증기준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8조의4 및 제40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안전설비등”이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 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안전기기 또는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안전설비등의 인증) ① 안전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안전설비등으로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설비등을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u>안전설비등</u>”이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u>안전기기</u> 또는 부품으로서 <u>산업통상자원부령</u>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5. · 6. (생 략)</p> <p><u><신 설></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4(<u>안전설비등의 인증</u>) ①</p> <p><u>안전설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안전설비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u>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할 <u>안전설비등으로서</u> 인증</p>

	<p><u>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 임대, 사용 또는 판매하 여서는 아니 된다.</u></p>
제4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40조(별칙)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 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 설비등을 양도, 임대, 사용 또 는 판매한 자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